

# 보 도 자 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368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 [ 선 고 ]

1.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민감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요건에 관한 재판관 서기석의 별개의견과 위 제공행위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2.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13. 12.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2018. 8. 30.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14. 3. 11.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51, 서울고등법원 2015노191, 대법원 2016도1690).
-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이하 ‘서울용산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게 2013. 12. 18. 청구인 박□□의 2010. 12. 18.부터 2013. 12. 18.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의 제공을, 2013. 12. 20.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각 요청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2. 20.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의 2010. 12. 1.부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행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제공행위 및 그 근거조항들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청구인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13. 12. 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 박□□의 2010. 12. 18.부터 2013. 12. 18.까지의 상병명, 요양기관명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 및 서울용산경찰서장이 2013.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의 2010. 12. 1.부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위 두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③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이라 한다), ④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3. 8. 6. 법률 제11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결정주문

-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피청구인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 이유의 요지

### ●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및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과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비로소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가. 영장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

협공단이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적극)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청구인 김○○의 2012. 1. 1.부터 2013. 12. 20.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44회의 요양급여내역 및 청구인 박□□의 2010. 12. 1.부터 2013. 12. 19.까지의 급여일자, 요양기관명을 포함한 총 38회의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인 김○○에 대한 요양급여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의 위치를 확인한 상태였고, 요청일에는 망원을 동원해 청구인 김○○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므로,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 김○○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 박□□에 대한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지는 못하였지만 그에 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비추어 청구인 박□□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박□□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아가 소재 파악 목적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이 제공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피의자의 현재 위치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고,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등 다른 수사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요양급여정보를 제외한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소재 파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이다.
- 반면 이 사건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하였던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정보인 요양급여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재판관 서기석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별개의견

-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특별규정이  
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족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8조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용산경찰서장이 그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  
당하여야 하는데, 법정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위와 같  
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  
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재판관 김창중, 재판관 조용호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반 대의견**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  
한 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함으로써,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  
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 당시 청구인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이었으므  
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다. 수사기  
관으로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영장을 집  
행하여야 하고, 도주 중인 청구인들의 소재는 수시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 또는 경로를 통하여 신속하게 청구인들의 소재 또는 예  
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 서울용산경찰서장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위치추적자료가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정보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전원을 끄고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치추적자료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 박□□의 경우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달리 청구인 박□□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으므로, 청구인 박□□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
- 법정의견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정을 들어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하나, 요양급여정보 제공이 최후의 보충적인 수사방법으로 기능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기지국 수사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이상, 기지국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상병명, 요양기관명, 병원 내방 기록’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서는 약 2~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토대로 청구인들이 주로 다녀간 병원의 위치를 분석하여 실제 생활근거지를 파악하거나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의 사람들에게 병원 내방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닐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정보 요청일 또는 제공일에 근접한 시기의 요양기관은 오히려 청구인들이 그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 2~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은 청구인들의 건강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개인의 정신이나 신체에 관한 단점을 나타내는 상병명이나 구체적인 진료내역과 같은 정도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청구인들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요양급여정보가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고 유출·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그들의 동의 없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하였는지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청구인들을 검거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 결국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상병명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요양급여일자, 요양기관명에 국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등과 같은 전문의의 병원인 경우에는 요양기관명만으로도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약 2~3년 동안의 장기간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

조가 규정한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의의가 있다.

- 또한 이 결정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민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밝힌 첫 사례에 해당한다.
-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인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은 특수상병명 등 일부 요양급여정보는 영장에 의해서만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정보는 수사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범위와 수사기관 제공 요건에 대한 이 결정의 해석이 적용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수사기관에게 제공되게 될 것이다.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된 2016헌마483 사건에서, 피청구인 김포시장이 2015. 7. 3. 피청구인 김포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2016헌마483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등을 특정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이다. 또한 2016헌마483 사건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부정 수급 관련 수사에 사용되었는데, 청구인들은 활동보조인 및 수급자로서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행정관청의 조사를 수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어 청구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성격, 사용 목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과 2016헌마483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었다.